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의 법적책임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 노정환

주요 약력

- 최초 경찰대, 검사장 출신 변호사 ※ '23. 9. 명예퇴직
- 검찰의 핵심 공안과 특수를 모두 거친 변호사
- 중대재해 전문가 평가
- 울산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검사장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통영지청장, 인천지검 2차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 산업재해 중점검찰청 울산지검 검사장 역임
- '중대산업재해' 논문 집필·발표, 주요 언론 보도
- 울산대 산업안전과정 특강, CSO포럼 특강, 방송토론 등
- S-OIL 사건 CEO, CSO 각 불처벌 사례
 - 현대차, 현대중, SK, 고려아연 등 다수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사회



노정환 울산지검장 9월27일 울산 남구 울산지검 검사실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가면 압수범죄만 늘릴 것”

단독 인터뷰 노정환 울산지검장, 논문 통해 중대재해법 허점 지적 최근 주관한 세미나에 유관기관 기업 관계자 300여 명 몰려

울산·오송특 기자 amos@ssajournal.com

최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7명이 사망한 뒤 가장 크게 대두된 키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그룹 오너까지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들에 큰 타격…입법 보완 시급”

무거운 처벌 조항을 앞세워 산재 사고를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의 법이지만, 적용 기준과 대상이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조항도 많아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칫 위험행위 수사와 처벌의 당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온다.

이런 가운데 현지 검사장이 공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나서 화제다. 노정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55·사법연수원 26기)이 그 주인공이다. 노 지검장은 9월27일 울산지검 대강당에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법조인 등 200여 명을 불러 ‘중대재해·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침 고용노동부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를 시작한 날이었다.

세미나 현장은 초청받은 200여 명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300석 규모 대강당이 가득 차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 세미나에서 노 지검장은 논문 발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보완 필요성을 조목조목 꼽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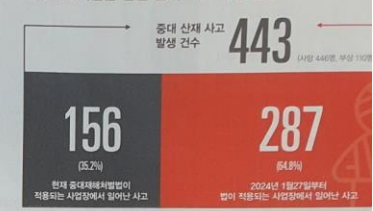
노 지검장은 “산업안전을 도외시키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영책임자에게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방법론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양한 산재 원인 중 기업의 책임만 부각해 처벌만능주의에 편승함으로써 나머지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해결책 마련 모색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선 정확한 산재 실태와 통계를 파악하고, 영국을 넘어 미국, 일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등 다수 선진국의 입법도 두루 비교해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이후 노 검사장을 따로 검사장실에서 만났다. 논문 내용보다 더 솔직하고 날카로운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래도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전체 사업장 사망 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이 나아 졌었다. 법 시행 효과가 열 없다고 하긴 힘들지 않다.

“단기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당장 기업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리며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재 사고 예방이란 궁극적인 법의 목적보다 처벌 회피에만 집중할 이치가 크다. 처벌 회피만 있을 정도로 조치하고 손을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러면 효과가 떨어지고, 더 나아가 압수범죄수사기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재 사고 발생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진성호 대법관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해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검거하지 못하는 법지를 늘리는 역효과까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다.”

관할 지역이자 국내 최대 공업도시인 울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어떤 분위기가 될까.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강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몰라도 확실히 경계는 너무 일한 게 아니냐며 불편해한다. 다만 대기업 사업장들은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전 예방 조치를 잘하고 있었다. 그 정도면 법을 위반하기 쉽지 않다. 반면 중소기업 사업장 대부분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심각한 분위기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일단 산업안전 인력이랄 게 없으니 산재 사고가 나면 대표가 다 책임자가 한다. 형이 확정되고 5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한 경우 누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도 받는다. 대기업에서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대표로 수사받고 기소돼 처벌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법체계상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걸린다. 그사이 CSO는 바뀔 테니 누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을 거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선 한 면 회사가 안 말하는 한 계속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법에, 더 무서운 가중처벌까지 있기에 느끼는 두려움이 상당히 행법보다 더 강화된 누벌 규정 시비에 위법될 가능성도 있다고 장은 우려했다. 노 지검장은 논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양한 사 회행법정주의 위반, 위임입법, 비례성의 원칙 위반, 책임주 등 위헌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시 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대 으로 정한다고 해왔다”면서 “그 행령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복을 하고,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위를 정하되 규정하는 대신 산업 건법 등 10가지 관계 법률만 명시 모집었다. 그는 “경영책임자 등을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도도 예측하게 하면서 유례없이 엄한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이투데이 > 사회 > 법조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입력 2023-11-10 07:00

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URL 복사하기

검찰 내 손꼽히는 중대재해 전문가...“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나서야”

'첫 경찰대 출신 검사장' 타이틀...검경의 행복한 동행
"중대재해 예방시스템·매뉴얼 있다면 무혐의 당연"



AliEx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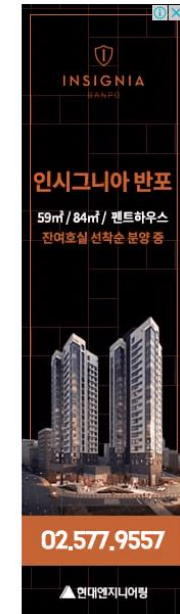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총
11억 쏜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많이 본 뉴스

- 01 [1보] 국제유가, 급등...WTI 4.10% ↑
- 02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
- 03 [투자전략] 반도체 사이클 '전환 신호'.....
- 04 [주간중시전망] 코스피 2430~2560 예상...
- 05 오늘부터 대학별 고사...“채점기준-기출문...
- 06 삼성, “휴대용 외장형 SSD 신제품 또 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력

중대재해 특별자문변호사 위촉식

최지원 입력 2023.10.11 16:56 지면 10면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노정환 중대재해 특별자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일 울산시청 시장집무실에서 노정환 중대재해 특별자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Contents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

- 0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목적?
- 02 입법경과
- 03 구성요건 구조
- 04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05 중대산업재해 발생
- 06 인과관계
- 07 CSO 관련 문제
- 08 입법[안]
- 09 처벌을 피하려면?

0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목적?

철콘 협회 강연

제1조(목적) 이 법은 ...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처벌설 : 법률명, 기존 처벌공백 극복 입법 경위
- 예방설 : 제1조 법문 해석 등

02-1. 입법경과

○ 입법경위 :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모방(2007년 제정)

○ 실제운영 : 중소기업 단일 사망사건 등 소규모 재해 적
용

연 평균 2건 기소 ⇒ 실패한 법률 평가!

○ 입법효과? : 기술발달, 생활수준 향상, 안전의식, 산재에
방

행정시스템의 선진성 등 다양한 요인 복합

작용

02-2. 입법경과 : 우리나라는 산재 후진국?

- 상식 = 지난 21년간 OECD 국가 사망률 1위?
- ILO 10만명당치명률(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 팩트체크 :

- 1994년 34.1명 1위 → 2019년 4.6명, 25년간 1/8 수준 감소,
 - '통근재해', '질병재해'를 제외시 순위는 더 낮아질 것
- 사망자(10년) : '12년 1,134명 → '21년 828명, 26% 감소

03. 구성요건 구조

제6조 제1항 제4, 5조(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분범 : 경영책임자등 신분 있어야 범죄 성립
- 고의범 :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고의 필요(판례)
But, 이행여부 확인의무 부과, 실무자 부실보고시 고의×
- 결과적가중범, 산안법 특별법적 성격 등

04-1.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법령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04-2.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사례1

사례1

○ 사건 개요 :

- A, B기업 모두 Y케미칼 세척제 납품받아 각 차량부품 제조 공정 사용, 근로자 10여명 독성간염 발생
- 안전보리체계 구축 등 의무위반(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혐의

○ 의무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

- 노사참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근로자 의견 청취하여 배기 장치 개선, 위험성 평가 후 개선책 마련, 작업환경개선 비용 등 예산을 편성, 집행 ⇒ 불기소

04-3.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사례2

사례2

○ 사건 개요 :

- 차량부품 제조공장에서 기계 내부 찌꺼기 제거작업 중 안전장치 고장으로 작동한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
- 안전보리체계 구축 등 의무위반(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혐의

○ 의무위반 여부에 따른 처분

- 회사 대표가 수회 고장 사실을 보고받고도 유해·위험 요인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 입건

05-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종류

- ① 사망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② 부상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질병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05-2. 중대산업재해 발생 : 다양한 논점

- 자살? : cf)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판례
- 치료기간? : cf) 요양기간, 실제 치료기간?
- 직업성 질병? : 시행령 제2조(별표1), 24가지 질병
- 경영자 교체와 책임? : 원인시점 VS 진단시점

05-3. 중대산업재해 발생 : 논점1

- 자살도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
-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 인정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불안·우울 증세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
- 판례에 따라 인정된다는 견해 有

○ 결론 :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연관된 비유형적 인과, 개인환경,

성장배경, 개인병력, 음주습관 등 다양한 원인 복합작용⇒
평균인 기준 판단

05-4. 중대산업재해 발생 : 논점2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 요양(주관적) ≠ 치료(객관적)
- 치료 예상기간? or, 실제 치료기간?
 - 5개월 진단, 기왕증 등으로 실제 6개월 치료
 - 6개월 진단, 실제 5개월 치료...이익되는 방향으로

06-1. 인과관계 : 수사실무 2단계

- 인과관계 : 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 인과관계 필요
- 2단계 인과관계
 - (1차 인과관계)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발생
 - (2차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 2단계 수사실무
 - (1차 수사) 일반기업/산재예방지도과, 건설현장/건설산재지도과, 화학사고/권역별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산안법위반 수사
 - (2차 수사)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

06-2. 인과관계 : 사례

사례

- 부산 옹벽 경비원 추락사망 사건
 - 아파트 옹벽 부근 청소 지시가 없었음에도 1미터 울타리 넘어 추락 위험 옹벽까지 간 것으로 확인
- 서울 청소 작업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 서울 주택가 청소 작업 중 기어 1단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동 걸어 교통사고 발생

○ 사고 경위가 이례적, 주요 사고 원인이 작업자의 주의소홀

07-1. CSO 관련문제 : 기업회장 처벌 여부

- 문제점 : '회장', '이사장', '의장' 등 대주주, 사실상 기업 지배, 법적책임은 대표(CEO)만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 사업 대표·총괄하는 실질적 권한·책임에 따라 경영책임자 인정
→ 기업회장도 처벌 가능
 - 임원 인사, 미래투자,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만 관여하고, 나머지 통상의 업무는 CEO에게 일임 → 처벌??

07-2. CSO 관련문제 : 대표이사와 CSO

○ 경영책임자등 개념 :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경영책임자(CSO)

○ CSO와 경영책임자 면책?

- 고용노동부(책임설) : 책임회피 방지 목적
- 다수설(면책설) : 문언해석, 책임주의, 국회 논의과정

○ 기타 논점

- 형식적 CSO를 둔 경우 경영책임자 면책 불가
- 사후보고 받는 정도로도 처벌?

07-3. CSO 관련문제 : 누범가중과 CSO

제6조 제3항 중대산업재해치사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대기업 CSO와 누범가중

- 통상 2년 수사·재판, CSO 교체시점 등 영향력 小

○ 중소기업과 누범가중

- 오너가 곧 대표, 영향력 大

08-1. 입법(안)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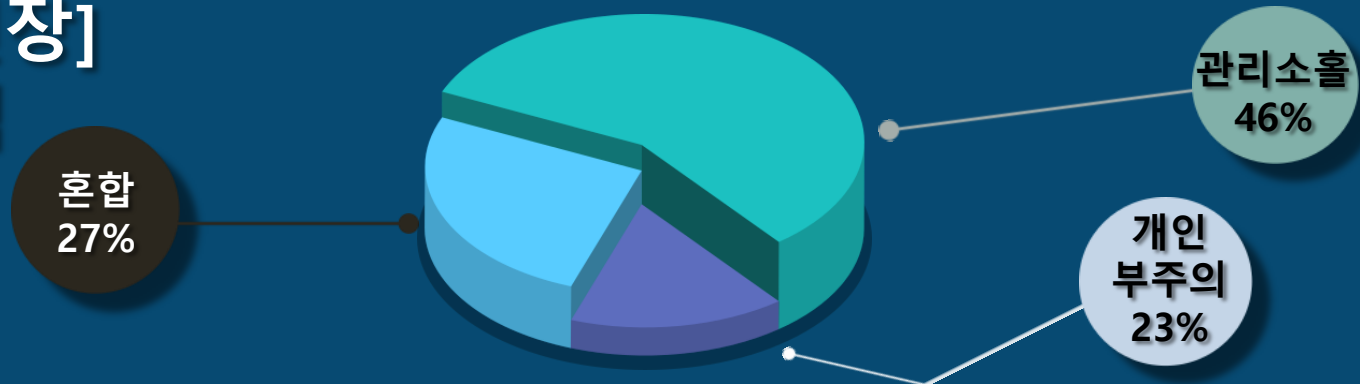
○ 엄벌주의 폐해

- 단기 : 범죄억지력 높아지는 형사정책적 효과
- 장기 : 중대재해 예방보다 처벌회피에 집중 $\Rightarrow$ 법의 권위 손상

○ 비과학적 접근

- 다양한 원인 중 기업의 책임만 부각, 과학적 접근 차단

[최근 5년 건설현장]
재해원인 분석



08-2. 입법(안) : 헌법위반 논란 규정 등

○ 4번째 안전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관련 관리상 조치의무
- 시행령,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안전보건 관련법령”

[헌재 ‘건축법위반’ 유사결정례]

- “관계법령 기준 위반시 처벌” 규정 ...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헌

○ 기타 논란 규정

- 확정판결 전 안전보건교육 수강명령, 재해발생 공표
- 가중처벌 특별법 성격 But, 질병재해는 구성요건 완화(10명...3명)
- 기타 누감가중 규정 등

08-3. 입법(안) : 방향

- 출발점 : 산업재해의 현실을 직시
 - 복합적·다중적 원인으로 발생
 - 엄벌주의 외 원인별 과학적 접근, 대책 수립해야
-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배워야
 - 엄벌주의 외 다양한 예방대책 적용
 - 과속방지턱, CCTV, 단속카메라, 등하교길 안내, 표지판 등

08-4. 입법(안) : 구체적 내용

○ 산재 블랙박스 제도 도입

- 차량 블랙박스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
- 보험료 할인제도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

- 현행 : 사고발생 후 구축여부 확인, 처벌
- 사전 인증시 혜택 부여로 예방효과 극대화

○ 사전 교육제도 도입

- 현행 : 사고 발생 후 강제 교육
- 사전 교육시 혜택 부여로 예방효과 극대화

09. 처벌을 피하려면?

2024년도 안전보건계획을 활용하라!!!!!!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2. 전담조직도
3. 유해성평가(정기,수시) 계획, 평가표, 조치 방안
4. 예산(편성, 집행) 계획
5. 안전보건담당자 평가 계획, 평가표, 조치 방안
6. 전문인력 배치(안) ... 2.와 결합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등 회의 계획
8. 중대재해매뉴얼 점검 비상훈련 계획
9. 협력업체 평가 계획, 평가표, 상벌기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 노정환